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- 1329호

「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0월 24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」 일부개정훈령안

1. 개정이유

위성영상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세부분류기준의 해상도를 높이는 등 민간에서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위성영상 세부분류 기준 완화(안 별표1)

위성영상의 공개제한 해상도 완화(4m→1.5m), 정밀보정하지 않은 2차원 좌표 공개, 신속한 보안 처리를 위해 국가보안·군사시설 중 노출 대상을 국가정보원장 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

3. 의견제출

「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」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 : 국토정보정책과장)에게 11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- 라. 제출의견 보내실 곳 :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
 -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-2동
 - 팩스 : 044-201-5540

4. 그 밖의 사항

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> 정책자료> 법령정보> 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(044-201-346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